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1450호 2023년 3월 15일(수)

입법예고

-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

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3월 15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
2. 개정이유

상위법인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일부 조항이 삭제 후 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 이동 신설됨에 따라 조례 인용 법률을 변경하고, 창업 초기 자금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생애 첫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지역 정착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근거법령 명시(안 제1조)
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

나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 반영함(안 제2조제1호)

- (기존)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(변경) 소상공인기본법

다. 생애 첫 창업지원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(안 제8조)

- (지원내용) 첫 창업지원금을 예산범위 내 지원
- (지원대상) 속초시에서 생애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소상공인으로 사업
자등록을 마친 초기 창업자
- (중복지원)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허용

※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,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례보증, 시설개선 등

라. 안 제8조 신설에 따라 기존 조문 번호 변경

- (기존) 제8조~제13조
- (변경) 제9조~제14조

마.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상위법령에 위
임 근거 없어도 제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문 삭제(안 제14조)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
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 : 지역경제과장)에게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대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
화번호 등

나.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

- 주 소 : 우)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, 속초시청 지역경제과
- 연락처 : 전화 033-639-2352, 팩스 033-639-2465, 전자문서 ireneny@korea.kr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, 전화, 전자문서, 직접방문 등

6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(☎033-639-235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속초시”를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 따라 속초시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”를 “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”로 한다.

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) ① 속초시에서 생애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소상공인에게 생애 첫 창업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.

③ 생애 첫 창업자들의 경영안정 및 지속 경영을 위하여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허용한다.

제11조(중전의 제10조) 제3항제1호 중 “위원 :”을 “위원:”으로 한다.

제12조(중전의 제11조) 제1항제1호 중 “제8조 제2항”을 “제8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4조(중전의 제13조)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속초시에</u>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 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·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 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소상공 인기본법</u> 」에 따라 속초시--- ----- ----- ----- 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
1. “소상공인”이란 「 <u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 」 <u>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</u> <u>한다.</u>	1. “소상공인”이란 「 <u>소상공인 기본법</u> 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<u>소상공 인을 말한다.</u>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「 <u>소득세 법</u> 」 제168조 또는 「 <u>부가가치 세법</u> 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 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 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 다.	제3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「 <u>소득세 법</u> 」 제168조 또는 「 <u>부가가치 세법</u> 」 제8조----- ----- ----- --.
<u><신 설></u>	<u>제8조(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)</u> ① 속초시에서 생애 최초로 사 업을 시작한 소상공인에게 생애

제8조 · 제9조 (생략)

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· ②
(생략)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

1. 당연직 위원 : 업무담당과장
2. (생략)

④ (생략)

제11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1. 제8조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2. (생략)

② · ③ (생략)

첫 창업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.

③ 생애 첫 창업자들의 경영안정 및 지속 경영을 위하여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허용한다.

제9조 · 제10조 (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)

제11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· 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---- 위원: -----
2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위원회의 회의) ① -----

-----.

1. 제8조제2항

2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 (생 략)

제13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
으로 정한다

제14조 (현행 제13조와 같음)
<삭 제>